

의안번호	2207454
의 퇴 인	여기구의원
회 답 일	2024. 11. 29.
추 계 번호	24B4537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u>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u> 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제9조에 따른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u>연도별 시행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농업인 소득보장위원회)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u>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공익 직접지불제도 시행)	국가는 <u>농업·농촌 및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u> 과 농업인의 <u>소득안정</u> 을 위하여 <u>직접지불제도</u> 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필수 농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사료 등 <u>필수농자재</u>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농업 기계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3조(농업 인기초연금 지급)	국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u>농업인기초연금 지급</u> 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4조(농외 소득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u>농외소득원 개발</u> 및 <u>농외소득 활동 지원</u> 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5조(농업 인안전보험 지원)	국가는 농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u>농업인 안전보험</u> 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6조(영농 형태양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의 확보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영농활동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7조(농업 인 고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 <u>민법</u> 」 상 <u>법인·조합</u> , 「 <u>상법</u> 」 상 <u>회사</u> , 「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업법인</u>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18조(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u>농촌융복합산업</u> 을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8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9조(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	
4	안 제10조(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 미대상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운영중(‘20~) ※ [참고자료 1]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참고자료 2] 농업직불제 개요 참고
5	안 제11조(필수농자재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2조(농업기계 자금지원)	
7	안 제13조(농업인기초연금 지급)	
8	안 제14조(농외소득 활동 지원)	
9	안 제15조(농업인안전보험 지원)	• 미대상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관련 정책(보험료 국고 지원 등)을 추진 중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자료 1]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0	안 제16조(영농형태양광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17조(농업인 고용 지원)	
12	안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미대상 –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사업 추진중 ※ [참고자료 1]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필수농자재 지원, 농업기계 자금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¹⁾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예를 들어,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안 제11조), 농업기계 자금(안 제12조) 지원 등의 경우, 지원 대상 농자재 및 농업기계 종류, 지원 요건 및 지원율, 상·하한액, 지원 대상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대략적인 추계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 \sum_{i,j,t} [(\text{필수농자재 구입(또는 사용)수량} \times \text{지원단가} \times \text{지원율})_{i,t} \\ & + (\text{농업기계 구입수량} \times \text{지원단가} \times \text{지원율})_{j,t}] \end{aligned}$$

이때, 지원단가 = (구입(사용)가격 - 기준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t 는 추계기간(향후 5년),

i 는 유형별 필수농자재

($i=1$ 일 때 농약, $i=2$ 일 때 비료, $i=3$ 일 때 사료, $i=4$ 일 때 유류, * ... 등)

* 유류는 다시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등으로 세분화

j 는 유형별 농업기계

($j=1$ 일 때 콤팩트, $j=2$ 일 때 트랙터, ... 등)

-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문별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지원요건, 국비·지방비 부담률 등 구체적 지원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제정안의 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 [참고자료 2] 농업직불제 개요
- [참고자료 3]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 [참고자료 4]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 [참고자료 5]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 또는 일시적 지원 사업 예산(안):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재정수반 요인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안 제10조 (공익직접 지불제도 시행)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1,603	25,054	28,421	29,987
	• 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지원 등	농지형상·기능유지, 마을공동체활동 등 농 업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준수사항 이행점 검을 위하여 고용하는 직불조사원(기간제근 로자)의 인건비 등 지 원 * (지원조건) 국비 100%	13,726	16,637	19,173	19,813
	•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	현장조사가 어려운 벽 오지, 섬 등에 있는 농 지에 대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현장에서 태블릿PC 를 통한 조사 결과 관 리 * (지원조건) 국비 100%	726	909	1,066	1,066
	• 준수사항 관련 업 무 추진 및 부정 수급 방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추 진하고, 지자체·민간 등의 준수사항 이행점 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부정수급 방 지 및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조건) 국비 100%	6,651	7,508	8,182	9,108
	• 실태조사 용역비	‘17-19 농지여건 개 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500	—	—	—
	공익기능증진직불		2,360,984	2,726,884	2,870,184	2,953,622

재정수반 요인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1071-302)					
	• 기본형공익직불	종전의 쌀·밭·조건불 리직불금 지급대상 농 지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자격요 건에 따라 소농직불 (농가단위) 또는 면적 직불금(농업인, 농업 법인) 지급 * (지원조건) 국비 100%	2,280,487	2,580,487	2,633,487	2,633,487
	• 선택형공익직불		—	146,397	236,697	320,135
	— 경관보전직불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 게 형성·유지·개선하 여 지역 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해 경 관작물을 재배하는 농 업인들에게 경관보전 직불금 지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준 경관초지 국비 80%, 지방비 20%)	9,880	9,880	16,830	16,830
	— 친환경농업직불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직불금을 지 급해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 (지원조건) 국비 100%	22,832	22,832	22,832	31,913
	— 친환경축산직불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 경축산물 인증(유기) 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조건) 국비 100%	1,585	1,585	1,585	4,085
	— 전 략 작 물 직 불 (23~) (구 논활용직불)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 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작작물을 재배	46,200	112,100	186,450	244,000

재정수반 요인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하는 농업인 등에게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 (지원조건) 국비 100%				
	-저탄소농업프로 그램 시범사업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경종, 축산) 이행	—	—	9,000	23,307
	-저탄소농업프로 그램시범사업(경 종)	에 따른 추가비용 등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불금 지급	—	—	4,057	13,247
	-저탄소농업프로 그램시범사업(축 산)	* (지원조건) 국비 100%	—	—	4,943	10,060
	사업관리비 (1071-303)		11,471	11,465	10,377	11,253
	• 지자체 행정경비	공익직불 신청·접수~ 지급까지 등록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등록 관리위원회 심사 등을 위한 전산입력보조원 채용, 심사수당 등 지 자체 행정경비 지원 * (지원조건) 국비 100%	10,087	10,441	9,556	10,432
안 제11조 (필수농자 재 지원)	• 공익직불 홍보 등 확산	공익직불제도와 성과 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연구용역,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등 지급 * (지원조건) 국비 100%	1,384	1,024	821	821
	농가사료직거래 활 성화지원 (3733-329)		355,000	355,000	300,000	300,000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를 위한 자금을 저리 로 융자 지원	355,000	355,000	300,000	300,000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10,878	49,078	52,564	62,498
	•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를 위한 자금을 저리 로 융자 지원	10,878	34,694	31,730	31,163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를 위한 자금을 저리 로 융자 지원	—	14,384	20,834	31,335

재정수반 요인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무기질비료 가격보 조 및 수급안정 지 원 (2260-377)		180,099	100,000	28,815	—
	•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 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 분의 80%)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20%, 농 협 30%, 자부담 20%	180,099	100,000	28,815	—
안 제12조 (농업기계 자금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710,000	610,000	535,000	535,000
	• 농업기계 구입지 원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 자지원(이차보전)으로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710,000	610,000	535,000	535,000
안 제14조 (농외소득 활동 지원)	농촌경제활성화지 원 (4130-300)		37,827	40,954	25,276	25,062
	• 농촌융복합혁신거 점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단위 거점(지구) 조성 및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컨설팅, 판로개 척 등)	16,115	17,398	10,214	8,967
	• 농촌휴양서비스산 업 육성	농촌관광 경영체 대상 상품 개발 및 홍보·마 케팅, 서비스 품질 제 고 등 지원	17,873	19,561	11,827	11,535
	• 농촌경제활성화지 원전문기관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 촌관광과 관련된 전문 인력 육성 및 효율적 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 운영비 지 원	3,839	3,995	3,235	3,585
	•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 최 및 자금·보육 등 사 업화 전 과정 지원	—	—	—	975

재정수반 요인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안 제15조 (농업인안 전보험 지 원)	농업인안전재해보 험(1031-368)		89,864	97,231	95,598	99,348
	•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재해에 대비 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	57,664	62,066	62,645	62,777
안 제16조 (영농형태 양광 지원)	농촌재생에너지보 급지원(2240-401)		1,050	420	—	—
	• 영농형태양광 재 배모델 실증지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재배 품목 에 대한 감수율, 재배 기법 등 실증연구	1,050	420	—	—
안 제18조 (농촌융복 합산업 지 원)	농촌경제활성화지 원 (4130-300)		37,827	40,954	25,276	25,062
	• 농촌융복합 혁신 거점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단위 거점(지구) 조성 및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컨설팅, 판로개 척 등)	13,290	14,375	10,214	8,9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농업직불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19년 이전 농업직불제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쌀고정직불제 (’05~’19) (논농업직불: '01~'04)	○ 지원목적: 쌀 생산량·가격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 지원 ○ 대상농지: '98~'00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타작물 재배, 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평균 100만원/ha
쌀변동직불제 (’05~’19) (쌀소득보전: '03~'04)	○ 지원목적: 쌀 농가에 직불금 지급하여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 ○ 대상농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 ○ 지원대상: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목표가격(214,000원/80kg)-수확기쌀값)×0.85-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04~’19)	○ 지원목적: 농업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 ○ 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03~'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 단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국고80%, 지방비20%)
밭농업 직불제 (’12~’19)	<밭고정> ○ 지원목적: 밭 이용 농지에 직불금 지급하여 밭농가 소득보전 및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밭고정 55만원/ha
	<논이모작(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6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 이모작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하여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과 '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논이모작 50만원/ha
친환경 농업직불제 (’99~)	○ 지원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 논 지원단가: 유기 70만원/ha, 무농약 50, 유기지속 35('18년~) ○ 밭 지원단가: (과수)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 유기지속 70('18년~) (채소·특작기타)유기 130만원/ha, 무농약 110, 유기지속 65('18년~)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09~)	○ 지원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젖소(우유) 50원/L,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등
경관보전직불제 (’05~)	○ 지원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 ○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ha, 준경관초지: 45/ha
경영이양직불제 (’97~)	○ 지원목적: 65~74세 농업인 농지 이양으로 고령은퇴농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지원대상: 65~74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 지원단가(지급기간):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2~10년 지급)
영농정착지원사업 (’18~)	○ 지원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 지원금액: 선발인원에게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18~'22: 100만원)) 지원

□ 2020년 이후 농업직불제

종 류 (’24년 예산)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 지급현황(’23)																								
공익 직불제 (’20~) (29,090 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24)> ○ 지원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지원대상: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table><tr><th rowspan="2">구간 단계</th><th rowspan="2">소농직불금 (0.5ha 이하)</th><th colspan="3">면적직불금(만원/ha)</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td><td rowspan="3">130만원/가구</td><td>205</td><td>197</td><td>189</td></tr><tr><td>논 비진흥</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 지급건수(’23): 1,285천건(소농 490, 면적 795) ○ 지급면적(’23): 1,109천ha(소농 153, 면적 956) ○ 지급액(’23): 23,018억원(소농 5,875, 면적 17,143)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사업비· 이행점검비 (388억원)	<사업비: 104억원, 이행점검비: 284억원(’24)> ○ 지원목적: ① 공익직불 신청·접수·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 홍보, 연구용역비 등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 집행액(’23): (사업비) 116, (이행점검비) 249																									
	선택형 직불제 (2,367억원)	<전략작물직불, 1,865억원(’24), ~’22까지 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 (동계작물 단일재배) 1ha당 50만원, (하계작물 단일재배) 가루쌀·두류 1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 1ha당 430만원, 옥수수 100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논콩·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 추가 지급(350만원/ha) ○ ’23년 지급건수-면적-지급액: 73천건-125천ha-1,08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28억원(’24)> ○ 지급건수(’23): 33천건 ○ 지급면적(’23): 33천ha ○ 지급액(’23): 210억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16억원(’24)> ○ 지급건수(’23): 21호 ○ 지급액(’23): 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168억원(’24)> ○ 지급건수(’23): 11천건 ○ 지급면적(’23): 13천ha ○ 지급액(’23): 85억원 <탄소중립프로그램, 90억원(’24)> ○ ’24년 신규도입																								

□ 최근 3년(2021~2023년)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최근 3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021~2023년>

(단위: 천ha, 천건, 억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기본형 직불제	1,083	1,122	22,268	1,058	1,129	21,943	1,109	1,285	23,018
－ 소농직불	146	450	5,399	144	450	5,405	153	490	5,875
－ 면적직불	937	672	16,869	914	679	16,538	956	795	17,143
선택형 직불제	143	94	819	131	96	741	169	119	1,379
－ 친환경직불 (농업+축산)	36	36	255	33	35	228	33	33 (축산 21건)	214
－ 경관보전직불	14	11	91	13	11	86	11	11	85
－ 전략작물직불 (~22 논활용직불)	93	47	473	85	50	427	125	73	1,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개요	법적근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인상차액의 80%)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733-329)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정책의 강구)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3031-305 / 306)	농업용 면세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규모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원 예산: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필수농자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180,099	100,000	28,815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3733-329)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345,000	355,000	355,000	300,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업자금이자보전(1038-301)					
	-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	10,878	34,694	31,730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	—	14,384	20,834
농업에너지 비용(유류비)	시설농가유가보조금 한시지원 (3031-305/306) - 시설농가 면세유 유 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22.10~12)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 지원단가: 월별('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 50%(국고보조율)	—	15,118	—	6,9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제도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86.3.1.~)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면세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최근 4년간 농업용 면세유 제도에 따른 면세액 현황: 2020~2023년>

구분	연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윤활유	LPG	합계 (kl/백만원)
공 급 량 (kl)	'20	85,299	843,127	442,469	29,713	259	11,726	1,412,593
	'21	87,015	852,466	439,787	28,902	218	14,053	1,422,441
	'22	87,284	860,222	422,408	30,461	200	15,211	1,415,786
	'23	86,769	847,081	363,843	28,611	187	14,034	1,340,525
면 세 액 (백만원)	'20	74,568	540,509	63,833	2,621	125	1,298	682,954
	'21	75,972	546,705	80,165	2,714	115	1,717	707,388
	'22	59,596	462,968	83,894	3,809	117	2,315	612,699
	'23	62,050	409,323	71,780	3,679	117	2,131	549,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4]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한국전력공사)²⁾

□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사업법」 제16조,³⁾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⁴⁾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계약종별 전력판매단가 추이: 2019~2023년>

(단위: 원/kWh)

연·월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2019	104.95	130.33	103.85	106.56	47.74	113.91	67.38	108.66
2020	107.89	131.60	103.99	107.35	48.45	114.35	67.03	109.80
2021	109.16	128.47	101.69	105.48	45.95	112.97	65.66	108.11
2022	121.32	139.10	111.53	118.66	56.89	124.53	74.26	120.51
2023	149.75	169.46	138.83	153.71	75.10	152.70	101.85	152.8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146쪽에서 발췌·정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2)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3)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2024.2.1.>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60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이하 생략)

<2024년 농사용전력 전기요금표>

(2024년 7월 1일 시행)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360	41.9	
을	저압	1,150	59.5	
	고압(A,B)	1,210	여름철(6~8월)	62.2
			봄·가을철 (3~5, 9~10월)	60.2
			겨울철(11~2월)	62.2

- 주: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자료: 한전ON > 전기요금 전기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 > 농사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5.jsp>>

[참고자료 5]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4년 6월 기준)

구분	지자체	지급 시작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농업인 수당	경기도	'21~	농업인	'21년~: 농업인당 5만원/월 (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22~	농가	'22년: 농가당 50만원/년 '23~: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20~	농업인	'20~'21년: 농가당 80만원/년 '22년~: 1인 농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지역화폐
	전라북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전라남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북도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남도	'22~	농가	농가당 30만원/년 (공동경영주 60만원/년)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신용·체크카드)
	제주도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년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24~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어업인 수당	인천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현금, 지역화폐 (카드, 상품권 등)
	경기(화성시)	'23	어민	어민당 60만원/년	
	전라북도	'21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전라남도	'20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북도	'23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남도	'20	어가	1인 어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1인	
	강원도	'21	어가	어가당 70만원/년	
	경상북도	'22	어가	가구당 60만원/년	
	경상남도	'22	어민	경영주당 30만원/년	
	울산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제주도	'22	어민	어민당 40만원/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